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설정 약관

제정 2003년 10월 20일	개정 2020년 05월 18일
개정 2005년 07월 04일	개정 2020년 06월 10일
개정 2006년 11월 01일	개정 2020년 07월 29일
개정 2008년 06월 19일	개정 2020년 08월 14일
개정 2009년 02월 14일	개정 2020년 12월 21일
개정 2012년 11월 01일	개정 2021년 02월 01일
개정 2015년 09월 01일	개정 2021년 02월 16일
개정 2016년 05월 18일	개정 2021년 03월 24일
개정 2017년 01월 02일	개정 2021년 04월 19일
개정 2017년 02월 14일	개정 2021년 05월 10일
개정 2017년 02월 27일	개정 2021년 05월 21일
개정 2017년 03월 13일	개정 2021년 08월 31일
개정 2017년 04월 10일	개정 2021년 09월 01일
개정 2017년 06월 21일	개정 2022년 04월 25일
개정 2017년 08월 21일	개정 2022년 05월 25일
개정 2017년 09월 07일	개정 2022년 08월 16일
개정 2017년 11월 24일	개정 2022년 10월 24일
개정 2018년 06월 18일	개정 2023년 01월 16일
개정 2018년 09월 21일	개정 2023년 04월 03일
개정 2018년 12월 03일	개정 2023년 05월 15일
개정 2019년 04월 10일	개정 2023년 06월 12일
개정 2019년 04월 19일	개정 2023년 08월 14일
개정 2019년 10월 14일	개정 2023년 10월 10일
개정 2019년 11월 25일	개정 2023년 10월 12일
개정 2020년 04월 06일	개정 2024년 04월 08일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1 조(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이하“회사”라 한다)간의 투자일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 3 조(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 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고객이 제 6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⑧ 고객은 제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조(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5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최소계약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된 고객의 자산은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최소계약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 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객과 회사 양자간 합의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 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반대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이 제 4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반대를 표시하였을 경우 또는 회사가 제 6 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고 운용을 종료한다.
- ⑥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1. <별지1>, <별지2>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별지1>, <별지2>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신규판매 및 계약연장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⑦ 회사가 계약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인수한 증권이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특수채 또는 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발행조건, 절차 등을 충족하는 채권인 경우,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제 7 조(투자일임방법 등)

-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 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 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 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서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고객 자산의 인출 등)

-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처분하여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
-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 9 조(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수수료)

-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제 3 항의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 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30 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⑥ 제 5 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 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 ⑦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⑧ 제 7 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중도해지수수료 이외의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운용성과와 연동한 성과보수 등을 고객과 사전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1 조(자산의 소유권)

-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서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우편등" 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회사는 제 1 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 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3 조(정보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4 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5 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는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7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된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의 투자일임재산의 인출로 인하여 투자일임재산이 제 5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지시(서면 또는 유선 등)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재산을 고객에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계좌 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고객은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9 조(투자일임재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0 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 본문이 변경되지 않고 <별지1>에 신규 유형만 추가되는 경우, 기존 유형 가입고객에게는 변경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유형이 추가된 별지는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다.

제 21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2 조(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3 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4 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통지가 연락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해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 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별지 1 > 신규가입 가능한 Wrap 유형

(1) 제5조 제1항 최소계약금액, 제10조 제1항의 투자일임 수수료, 제10조 제7항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구분	유형명	수수료율	최소계약 금액	비고
ETF 자산배분형 랩	Flexible Korea 랩	연 1.6%	1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위탁매매수수료 등 미징수)
	Flexible China 랩 (해외상장형)	연 2.0%	3천만원	중도해지 수수료 없 음. 주식매매에 따른 국내위탁매매수수료 는 부담하지 않으며, 단, 편입자산 매매에 따른 거래제세금, 해 당상품의 약관·설명 서에 정한 보수, 환 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등 당사 에 귀속되지 않는 세 금 및 비용은 고객 별로 부담
	선진국 Focus ETF 랩	연 1.6%	5천만원	로보어드바이저에 의 한 운용
	다이렉트 ETF랩 (일반형)	연 1.2%	1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주식매매에 따른 국 내위탁매매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며, 단, 편입자산 매매에 따른 거래제세금, 해 당상품의 약관·설명 서에 정한 보수, 환 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등 당사 에 귀속되지 않는 세 금 및 비용은 고객 별로 부담
	다이렉트 ETF랩 (혼합형)	연 0.8%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1천만원	중도해지 수수료 없 음. 주식매매에 따른 국내위탁매매수수료 는 부담하지 않으며, 단, 편입자산 매매에 따른 거래제세금, 해 당상품의 약관·설명 서에 정한 보수, 환 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등 당사 에 귀속되지 않는 세 금 및 비용은 고객 별로 부담
	글로벌 자산배분 ETF 랩	연 1.5%	1천만원	중도해지 수수료 없 음. 주식매매에 따른 국내위탁매매수수료 는 부담하지 않으며, 단, 편입자산 매매에 따른 거래제세금, 해 당상품의 약관·설명 서에 정한 보수, 환 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등 당사 에 귀속되지 않는 세 금 및 비용은 고객 별로 부담
	글로벌 섹터 ETF 랩	연 1.5%	1천만원	중도해지 수수료 없 음. 주식매매에 따른 국내위탁매매수수료 는 부담하지 않으며, 단, 편입자산 매매에 따른 거래제세금, 해 당상품의 약관·설명 서에 정한 보수, 환 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등 당사 에 귀속되지 않는 세 금 및 비용은 고객 별로 부담
	Global X ETF 랩 (일반형)	연 2.4%	1천만원	중도해지 수수료 없 음. 주식매매에 따른 국내위탁매매수수료 는 부담하지 않으며, 단, 편입자산 매매에 따른 거래제세금, 해 당상품의 약관·설명 서에 정한 보수, 환 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등 당사 에 귀속되지 않는 세 금 및 비용은 고객 별로 부담

	Global X ETF 랩 (혼합형)	연 1.2%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1천만원	별도로 부담
	Global X ETF 랩 (성과형)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1천만원	
	월지급식 Global X ETF 랩	연 2.4% (단 5년 이상 투자시 연 1.0%)	2천만원	
	블리오더매운맛 글로벌ETF 랩	연 1.2%	1천만원	
	배당성장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랩	연 1.5% (단, 5년 이상 투자 시 연 1.0%)	2천만원	
	슈퍼테마 ETF 랩 (일반형)	연 2.0%	1천만원	
	슈퍼테마 ETF 랩 (혼합형)	연 1.0%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1천만원	
	적립식 슈퍼테마 ETF 랩 (일반형)	연 2.0%	50만원	
	적립식 슈퍼테마 ETF 랩 (혼합형)	연 1.0%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50만원	
국내 주식운용랩	TIGER 섹터 ETF 랩 (KOREA 스마트 베타)	연 0.95%	1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위탁매매수수료 등 미징수)
	TIGER 섹터 ETF 랩 (KOREA 인덱스 헤지)	연 0.95%	1천만원	
	Best Selection 자문형 랩	연 1.9%	3천만원	
	Focusing 10 랩	연 1.9%	5천만원	
	Best Selection 국내 자문형 랩 (일반형)	연 2.0%	3천만원	
	Best Selection 국내자문형랩 (혼합형)	연 1.0%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Best Selection 국내자문형랩 (성과형)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글로벌 주식운용랩	베트남&인도네시아 Focus 랩 (일반형)	연 2.4%	5천만원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주식매매에 따른 국내위탁매매수수료 는 부담하지 않으며, 단, 편입자산 매매에 따른 거래제세금, 해 당상품의 약관·설명 서에 정한 보수, 환 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등 당사 에 귀속되지 않는 세 금 및 비용은 고객 별도로 부담
	베트남&인도네시아 Focus 랩 (혼합형)	연 1.2%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5천만원	
	베트남&인도네시아 Focus 랩 (성과형)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5천만원	
	베트남 랩 (일반형)	연 2.4%	3천만원	
	베트남 랩 (혼합형)	연 1.2%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베트남 랩 (성과형)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미국주식 Focus 랩	연 2.4%	2천만원	

	슈퍼스타크 랩 (일반형)	연 2.0%	3천만원	
	슈퍼스타크 랩 (혼합형)	연 1.0%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Best Selection 글로벌 랩 (일반형)	연 2.4%	3천만원	
	Best Selection 글로벌 랩 (혼합형)	연 1.2%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Best Selection 글로벌 랩 (성과형)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Best Selection 차이나 랩 (일반형)	연 2.4%	3천만원	
	Best Selection 차이나 랩 (혼합형)	연 1.2%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Best Selection 차이나 랩 (성과형)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미래에셋증권 AI 자문형 랩 (일반형)	연 2.0%	1천만원	
	미래에셋증권 AI 자문형 랩 (혼합형)	연 1.0%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1천만원	
	Best Selection 글로벌 맞춤형 랩	협의	협의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주식매매에 따른 국내위탁매매수수료 는 부담하지 않으며, 단, 편입자산 매매에 따른 거래제세금, 해 당상품의 약관·설명 서에 정한 보수, 환 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등 당사 에 귀속되지 않는 세 금 및 비용은 고객 별로도 부담(랩어카 운트에 포함된 금융 투자상품의 보수는 별도 부담)
종합자산 관리랩	CR 랩	연 0.3%	10억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 자상품의 보수는 별 도 부담)
	Premier S 랩	연 0.3% (5억 이하) 연 0.1% (5억 이상) *금액별 체차적용	3천만원	
	Premier SAFE 랩	연 0.1%	3천만원	
	Premier Multi 랩	국내주식/ETF/ETN 연 2.8% (단, 채권형ETF는 연 0.3%)	3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현금/RP 연 0.1% 해외채권 연 0.85% 집합투자증권, 국내채권 연 0.3%		내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의 보수는 별도 부담) 채권형ETF 해당 종목은 <별지1> 하단내용 참고
Premier Global 랩 (일반형)		해외주식/ETF/ETN 연 3.0% (단, 채권형ETF는 연 0.3%) 국내주식/ETF/ETN 연 2.8% (단, 채권형ETF는 연 0.3%) 해외채권 연 0.85% 집합투자증권, 국내채권 연 0.3%	3천만원	
Premier Global 랩 (혼합형)		해외주식/ETF/ETN 연 1.5% (단, 채권형ETF는 연 0.15%) 국내주식/ETF/ETN 연 1.4% (단, 채권형ETF는 연 0.15%) 해외채권 연 0.42% 집합투자증권, 국내채권 연 0.15%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Premier Global 랩 (성과형)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Premier Global 랩 (단일형)		해외주식/ETF/ETN 국내주식/ETF/ETN 국내채권/ 랩전용펀드/현금, 외화, RP 연 2.0% (단, 채권형 ETF는 연 0.3%) 해외채권 연 0.85% 집합투자증권 연 0.3%	3천만원	
Premier Global Plus 랩 (일반형)		해외주식/ETF/ETN 연 3.0% (단, 채권형ETF는 연 0.3%) 국내주식/ETF/ETN 연 2.8% (단, 채권형ETF는 연 0.3%) 해외채권 연 0.85% 집합투자증권, 국내채권 연 0.3% 랩포트폴리오 개별 랩수수료 징수	3천만원	
Premier Global Plus 랩 (혼합형)		해외주식/ETF/ETN 연 1.5% (단, 채권형ETF는 연 0.15%) 국내주식/ETF/ETN 연 1.4% (단, 채권형ETF는 연 0.15%) 해외채권 연 0.42% 집합투자증권, 국내채권 연 0.15% 랩포트폴리오 개별 랩수수료 징수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3천만원	
Premier Global Plus 랩 (성과형)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랩포트폴리오 개별 랩수수료 징수	3천만원	

	<p>Premier Global Plus 랩 (단일형)</p>	<p>해외주식/ETF/ETN 국내주식/ETF/ETN 국내채권/ 랩전용펀드/현금,외화,RP 연 2.0% (단, 채권형ETF는 연 0.3%) 해외채권 연 0.85% 집합투자증권 연 0.3% 랩포트폴리오 개별 랩수수료 징수</p>	<p>3천만원</p>	
	<p>SMART랩 (일반형) 랩포트폴리오로만 가입 가능</p>	<p>해외주식/ETF/ETN A형 연 3.0% B형 연 2.5% C형 연 2.0% D형 연 1.5% E형 연 1.0% (단, 채권형ETF는 A형 연 0.3%, B, C, D, E형 연 0.2%) 국내주식/ETF/ETN A형 연 2.8% B형 연 2.5% C형 연 2.0% D형 연 1.5% E형 연 1.0% (단, 채권형ETF는 A형 연 0.3%, B, C, D, E형 연 0.2%) 집합투자증권/국내채권 A형 연 0.3% B형 연 0.2% C형 연 0.2% D형 연 0.2% E형 연 0.2% 해외채권 A형 연 0.85% B형 연 0.75% C형 연 0.75% D형 연 0.75% E형 연 0.75% 주식형 랩전용펀드 A형 연 1.5% B형 연 1.4% C형 연 1.4% D형 연 1.4% E형 연 1.4% 채권형 랩전용펀드 A형 연 1.0% B형 연 0.9%</p>	<p>없음</p>	

		C형 연 0.9% D형 연 0.9% E형 연 0.9% MMF 랩전용펀드 A형 연 0.4% B형 연 0.3% C형 연 0.3% D형 연 0.3% E형 연 0.3% 기타 랩전용펀드 A형 연 1.3% B형 연 1.2% C형 연 1.2% D형 연 1.2% E형 연 1.2% (A~E 중 고객과 합의)		
	SMART랩 (혼합형) 랩포트폴리오로만 가입 가능	주식/ETF/ETN B형 연 2.5% C형 연 2.0% D형 연 1.5% E형 연 1.0% (B~E 중 고객과 합의) (단, 채권형 ETF는 연 0.2%) 집합투자증권/국내채권 연 0.2% 해외채권 연 0.75% 주식형 랩전용펀드 연 1.4% 채권형 랩전용펀드 연 0.9% MMF 랩전용펀드 연 0.3% 기타 랩전용펀드 연 1.2% + 성과보수 (고객과 합의)	없음	
본사운용 펀드랩	이머징 채권 랩	연 0.3%	1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 자상품의 보수는 별 도 부담)
	글로벌자산배분랩	연 0.3%	임의식 1천만원 적립식 20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 자상품의 보수는 별 도 부담)
	우리아이글로벌적립식랩	연 0.1%	10만원	
	글로벌 두루두루_안정형	연 0.8%	1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 자상품의 보수는 별 도 부담)
	글로벌 두루두루_중립형	연 1.0%	1천만원	
	글로벌 두루두루_수익형	연 1.2%	1천만원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랩 *별지1 (4)의 내용 적용	없음	10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 자상품의 보수는 별 도 부담)
채권운용랩	채권_표준형 랩	협의	협의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채권_맞춤형 랩	협의	협의	
	채권_특정형 랩	협의	협의	
	MMW	협의	협의	
	채권_표준형 랩(성과보수형)	협의	협의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채권_맞춤형 랩(성과보수형)	협의	협의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채권_특정형 랩(성과보수형)	협의	협의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CMA	Wrap형 CMA(개인)	연 0.15%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Wrap형 CMA(법인)	연 0.10%	-	

* 선취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경우 고객의 중도해지시 선취수수료를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조 제 7호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지표 설정 / 또는 고객과 별도 합의

(2) 제10조 제4항의 수수료 납부기한은 30일 내로 한다.

(3) 제10조 제1항의 수수료징수일 : 매 영업일과 매 월/분기 첫 영업일 (1월, 4월, 7월, 10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전액출금/결산 출금시, 자산매도시 등 (단, 고객과 별도 협의 시 해당 내용 우선 적용)

(4)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랩 운용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 집합투자증권 판매비율 제한(연 25%)을 준수하여 운용한다.
- 동일 펀드(종목)는 계좌별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 편입할 수 없다.
- 최소 분기 1회 이상 위험자산의 비중 재조정(리밸런싱)을 검토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해서 계열사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지 않는다.

(5) 채권형ETF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에서 '기초자산분류' 값이 채권인 ETF
(경로 : [http:// data.krx.co.kr](http://data.krx.co.kr) > 통계 > 기본통계 > 증권상품 > ETF > 전종목 기본정보)
- 추가 지정 종목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점운용랩 채권형 유니버스 ETF 종목
(경로 : <http://securities.miraeasset.com> > 금융상품 > 신탁/Wrap > 지점운용랩 채권형

ETF 유니버스

〈 별지 2 〉 판매 종료된 Wrap 유형(신규 가입 불가 유형)

(1) 제5조 제1항 최소계약금액, 제10조 제1항의 투자일임 수수료, 제10조 제7항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구분	유형명	수수료율	최소계약 금액	비고
ETF 자산배분형랩	Flexible China 랩 (국내상장형)	연 2.0%	1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위탁매매수수료 등 미징수)
	Flexible TOM 랩	연 1.6%	1천만원	
	Folione글로벌10	연 0.5%	1천만원	
	Folione글로벌30	연 0.7%	1천만원	
	Folione글로벌 맞춤형	협의	협의	
	Folione알파_성장형C	연 1.5%	5천만원	
	Folione베이직_성장형A	연 1.5% (0.5%선취)	1천만원	
	ETF스위칭 성장형	연 1.0%	1천만원	
	Folione베이직_성장형C	연 1.0%	1천만원	
	Folione베이직_적립형	연 1.5%	30만원	
	Folione베이직_채권혼합30형	연 0.7%	1천만원	
	Folione베이직_채권혼합10형	연 0.8%	1천만원	
	Folione 적극투자형	연 1.5%	5천만원	
	ETF스위칭 적극투자형	연 1.5%	1천만원	
	Folione알파_성장형A	연 1.5% (0.5%선취)	5천만원	
	Folione 성장형	연 1.0%	5천만원	
	쿼터백 다이렉트랩 (해외ETF)	선취 1.2%	3천만원	중도해지시 선취수수료 환 급금의 70%를 징수
	쿼터백 다이렉트랩 (TIGER베타)			

ETF 자산배분형 랩 (환헤지)	Flexible China 랩 (해외상장형)	연 2.0%	3억원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주 식매매에 따른 국내위탁매 매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 며, 단, 편입자산 매매에 따른 거래제세금, 해당상 품의 약관·설명서에 정한 보수, 환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등 당사에 귀 속되지 않는 세금 및 비용 은 고객 별도로 부담
	선진국 Focus ETF 랩	연 1.6%	3억원	
국내 주식운용랩	Diamond 랩	연 1.9%	10억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위탁매매수수료 등 미징 수)
	성장가치투자 랩	연 1.5%	1천만원	
	배당성장지수 랩	연 1.5%	2천만원	
	Dynamic ETF 랩	연 1.2%	1천만원	
	아이러브컴퍼니 적립형	선취 1.0%	-	중도해지시 선취수수료를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일 할 계산하여 반환
	골든에이지 2호	선취 0.5% + 후취 0.5%	1억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위탁매매수수료 등 미징 수)
	골든에이지 3호	선취 0.5% + 후취 0.5%	1억원	
	골든에이지 3-C호	연 0.7%	5천만원	
	BS목표상환	선취 2%	5천만원	
	맞춤형(공격투자형)1호	연 0.3%	1천만원	
	Best Selection 중소형 랩	연 1.9%	3천만원	
	Active 100 랩	연 1.9%	1억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위탁매매수수료 등 미징 수)
	Best ETF 랩	연 0.9%	1천만원	
	FOCUS형 랩	월 1,000원 (정액), 초과수익의 10%	500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위탁매매수수료 등 미징수)
	공격투자형 랩	연 0.3%	100만원	
	분할매수랩	연 1.5%	1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위탁매매수수료 등

Folione섹터_성장형 랩	선취 1.0% + 연 1.0%	1천만원	미징수)
Folione섹터_성장형 2호 랩	연 1.5%	1천만원	
혼합형 60AA 1호 랩	연 1.8%	3천만원	
ETF적립형 KODEX200 랩	연 1.8%	20만원	
대표기업지수(직접형-AC) 랩	연 2.25%	5천만원	
대신자산 Active 1-A호 랩	선취 0.5% + 연 1.0%, 목표 10%초과 15%	3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위탁매매수수료 등 미징수)
대신자산 Active 1-C호 랩	선취 0.5% + 연 2.0%	3천만원	
대신자산 이벤트드리븐 1호 랩	선취 1.0% + 연 1.0%	3천만원	
대신자산 장기성장형 1-A호 랩	선취 0.5% + 연 1.0%, 목표 10% 초과 15%	3천만원	
브레인 Wrap 1-A호	선취 0.5% + 연 1.0%, 목표 10% 초과 15%	3천만원	
브레인 Wrap 1-C호	선취 0.5% + 연 2.0%	3천만원	
브레인 Wrap 2-A호	선취 0.5% + 연 1.0%, 목표 10% 초과 15%	3천만원	
브레인 Wrap 2-C호	선취 0.5% + 연 2.0%	3천만원	
브레인 액티브 단위형 1호 랩	선취 1.0% + 연 1.5%	3천만원	
브레인 액티브 단위형 2호 랩	선취 1.0% + 연 1.5%	3천만원	
J&J Wrap 1-A호 랩	선취 0.5% + 연 1.0%, 목표 10% 초과 15%	3천만원	
J&J Wrap 1-C호 랩	선취 0.5% + 연 2.0%	3천만원	
LEO Wrap 1-A호	선취 0.5% + 연 1.0%, 목표 10%	3천만원	

		초과 15%		
	LEO 자문 적립식 랩	선취 1.0% + 연 1.0~2.0%	1천만원	
	LEO Wrap 1-C호	선취 0.5% + 연 2.0%	3천만원	
	LEO Prestige 랩	연 2.0%	1억원	
	V&S Wrap 1-C호	선취 0.5% + 후취 2.0%	3천만원	
	V&S Wrap 2C호	연 2.0%	3천만원	
	Super Manager Wrap	연 2.0%	5천만원	
	KDB Auto Switching 1-S1	선취 1.5% + 연 1.0%	3천만원	
	HR Wrap 1-A호	선취 0.5% + 연 1.0%, 목표 10% 초과 15%	3천만원	
글로벌 주식운용랩	글로벌 컨슈머 랩	연 2.8%	5천만원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주 식매매에 따른 국내위탁매 매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 며, 단, 편입자산 매매에 따른 거래제세금, 해당상 품의 약관·설명서에 정한 보수, 환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등 당사에 귀 속되지 않는 세금 및 비용 은 고객 별도로 부담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랩	연 2.8%	5천만원	
	글로벌 그로스 랩	연 2.8%	5천만원	
	아시아 그레이트컨슈머 랩	연 2.8%	5천만원	
	G2(미국 + 차이나) 랩	연 2.8%	5천만원	
	All 차이나 랩	연 2.8%	5천만원	
	본토 차이나 랩	연 2.8%	5천만원	
	글로벌 Private 랩	연 1.6%	3억원	

	ChinaDirect 랩	연 0.8%(선취)	1천만원	
글로벌 주식운용랩 (환헤지)	글로벌 그레이트컨슈머 랩	연 2.8%	3억원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주식매매에 따른 국내위탁매매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며, 단, 편입자산 매매에 따른 거래제세금, 해당상품의 약관·설명서에 정한 보수, 환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등 당사에 귀속되지 않는 세금 및 비용은 고객 별도로 부담
	글로벌 그로스 랩	연 2.8%	3억원	
	아시아 그레이트컨슈머 랩	연 2.8%	3억원	
	G2(미국+차이나) 랩	연 2.8%	3억원	
	All 차이나 랩	연 2.8%	3억원	
	본토 차이나 랩	연 2.8%	3억원	
종합자산 관리랩	일반형	연 0.1%	1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의 보수는 별도 부담)
	Premier 랩	연 1.6%	3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정율 수수료 유형 ¹⁾
	PB운용 주식A형(평잔) 랩	연 2.5%	1천만원	중도해지시 선취수수료 환급금의 70%를 징수
	PB운용 주식B형(선취+성과보수) 랩	연 1%(선취) + 성과보수(협의)	1천만원	
	PB운용 주식C형(성과보수) 랩	성과보수(협의)	1천만원	
	PB운용 주식파생A형(평잔) 랩	연 2.5%	1천만원	
	PB운용 주식파생B형(선취+성과보수) 랩	연 1%(선취) + 성과보수(협의)	1천만원	

	PB운용 주식파생C형(성과보수) 랩	성과보수(협의)	1천만원	
	PB운용 종합자산관리A형(평잔) 랩	연 1.8%	1천만원	
	PB운용 종합자산관리B형 (선취+성과보수) 랩	연 0.8%(선취) + 성과보수(협의)	1천만원	
	PB운용 종합자산관리C형 (성과보수) 랩	성과보수(협의)	1천만원	
본사운용 펀드랩	AUTO 100 랩	연 0.3%	3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의 보 수는 별도 부담)
	AUTO 60 랩	연 0.3%	3천만원	
	아시아퍼시픽 AUTO	연 0.3%	3천만원	
	자산배분 MP 랩	연 0.3%	3천만원	
	AUTO SAFE 랩	연 0.1%	1천만원	
	SAFE PLUS	연 0.1%	1천만원	
	글로벌리치랩	연 0.1%	1천만원	
	2010분리과세SOC 랩	선취 0.5% + 연 0.3%	1천만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의 보 수는 별도 부담)
	대표기업지수(자유적립) 랩	연 1.8%	-	
	대표기업지수(혼합형30) 랩	연 0.9%	-	
	산은2020펀드 랩	선취 0.6% + 연 0.9%	-	
	역동의 아시아형 랩	연 1.35%	-	
	친디아형 랩	연 1.35%	-	
	In Europe형(선) 랩	연 1.2%(선취)	-	
	유전펀드 랩	연 0.3%	1천만원	

채권운용랩	Turn Around, 채권 랩	연 0.3%	3천만원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의 보수는 별도 부담)
	SAFE 랩 (ELS형)	연 0.3%	1천만원	
	단기운용채권 랩	연 0.3%	100억원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가입대상: 법인/수수료 협의가능
	맞춤형 채권 랩	연 0.3%	협의	
CMA	MMW형 CMA(개인)	연 0.15%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MMW형 CMA(법인)	연 0.10%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경우 고객의 중도해지시 선취수수료를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조 제 7호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지표 설정 / 또는 고객과 별도 합의

1) 펀드 교체 횟수와 무관하게 정율 수수료 징수 - 금융투자상품에서 수취한 보수 · 수수료 합계가 연(年) 기준 1.6% 초과시는 초과부분 환급됨.

(2) 제10조 제4항의 수수료 납부기한은 30일 내로 한다.

(3) 제10조 제1항의 수수료징수일 : 매 영업일과 매 월/분기 첫 영업일 (1월, 4월, 7월, 10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전액출금/결산 출금시, 자산매도시 등 (단, 고객과 별도 협의 시 해당 내용 우선 적용)

〈별첨〉

1. 제16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정하는” 연체이자자는 다음과 같다.

- 반환지연기간 : 철회요청일 + 3영업일부터 반환일까지

- 연체이자율 : 9.9%

※ 연체이자 = 반환대상금액 × 연체이자율(9.9%) × 반환지연기간 ÷ 365 (윤년의 경우, 366일)